

의안번호	2200435
의 퇴 인	오세희의원
회 답 일	2024. 07. 11.
추계번호	24A0891

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이자 감면)	- 정부는 방역조치의 시행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10조¹⁾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(이하 “소상공인정책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이자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	안 제9조(대출의 감면)	- 정부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음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대출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	안 제11조제2항 (금융지원의 신청 및 절차)	제6조부터 제10조²⁾까지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자 및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15조제2항 (채무상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)	정부는 소상공인의 부채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부채를 상환기일 전에 상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액에 대한 이자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1)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10조(소상공인정책심의회) ①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
2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3.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4.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·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
5.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·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중소기업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
2. 소상공인, 경제·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.

⑥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8조(이자 감면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안 제9조(대출의 감면)	
	안 제11조제2항 (금융지원의 신청 및 절차)	
2	안 제15조제2항 (채무상환 소상공인 등 에 대한 지원)	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, 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제6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「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」 (의안번호: 2200435)

제6조(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) ①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구체적인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장기분할상환) ①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기분할상환의 구체적인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이자 감면) ① 정부는 방역조치의 시행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(이하 “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자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대출의 감면) ① 정부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출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) ①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상환기간 연장
2. 상환유예
3. 장기분할상환
4. 이자 감면
5. 채무 감면

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.

2. 상세 사유

- 제정안은 방역조치 시행기간 중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, 부채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감면, 부채 조기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,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은 ‘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’, ‘희망대출’, ‘저신용 소상공인 용자’, ‘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용자’, ‘코로나19 직접대출’ 등을 통해 집행된 바 있음

구분	예산현액 (억원)	금리/한도	대상	상환조건	지원실적 (억원)
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	21,815	연 1.5~2.0% 고정 /2~7천만원	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한 중저신용(4등급~) 소상공인	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	21,815
코로나19 직접대출	7,723	연 1.5% 고정 /1천만원			7,723
1천만원 긴급대출	601	연 2.9% 고정 /1천만원	청년·장애인·여성기업 중 저신용(6 등급~) 소상공인		601
2천만원 긴급대출	2,982	연 2.0% 고정 /2천만원	소상공인 (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 리두기 격상으로 개시)		2,982
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용자	8,638	연 1.9% 고정 /2천만원	집합금지업종 중 사업장 유상임차 소상공인		8,638
소상공인 고 용연계 용자	5,751	연 2.0% 고정 /1천만원	집합금지·영업제한·경영위기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		5,751
저신용 소상공인 용자	10,203	연 1.5% 고정 /1천만원	집합금지·영업제한·경영위기기업종 중 저신용(5등급~) 소상공인		9,104
일상회복 특별용자	20,000	연 1.0% 고정 /2천만원	인원·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		6,237
희망대출	14,000	연 1.0% 고정 /1천만원	영업시간제한 등으로 매출감소한 저신용(6등급~) 소상공인		10,555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의 규모와 상환액 및 이자액 규모, 부채 상환 곤란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, 조기 상환 소상공인의 규모와 상환액 및 이자액 규모, 조기 상환액에 대한 반환 이자액 결정 방식, 채권 발행 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, 이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, 이자 및 대출 감면 등에 관한 대상자 및 지원규모가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이자 및 대출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
- 이에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신헌태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헌태	02-6788-4653	heontshin@nabo.go.kr